

제290회 임시회
2010. 6. 18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소 방 위 원 회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6. 18.
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5월 27일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10년 6월 3일

3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
제29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(2010. 6. 15.)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길중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, 시·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 ('06.12.20 개정, 부칙에서 '10. 7. 1.설치토록 규정)
-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「지방자치법」 외에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문구 추가 (안 제1조)
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외
에 「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문구 추가 (안
제5조)
- 목적조항(제1조)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
문구 수정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)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
는 「교육위원회」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
공무원의 정수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
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7명을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내 교육위원회
지원조직인 전문위원에 대한 정수관리 근거규정, 사무직원의 정
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, 안 제5조에 추가하고,
- 안 제2조 제3항에 “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
로 정하도록 명문화 하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
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2010년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
따라 그동안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였던 충
청북도교육청내에 교육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의사국이 폐지되고 충
청북도의회내에 교육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을 설치운영하려 것으로,
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전문위원실 정원을 7명으로 하여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를 일부개정 중에 있음.
 -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과 학예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「충청북도 위원회 조례」를 2010년 5월 14일 개정공포 하였음.
 - 따라서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기구에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 조직과 정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고, 정원의 관리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 판단됨.
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은 2010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,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4월 26일 시도에 「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 운용방안 안내」를 통보함.
- 또한 개정전 조례에서 제6조(시행규칙)에 두었던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을 두는 조항을 안 제2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
- 자치법규의 구성 및 규정순서는 명문상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조문을 배열할 때 형식적 배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제2조 제명을 「사무처의 설치」에서 「사무처의 설치 등」으로 확대하여 사무분장 사항까지 규정하려는 것과
 - 제2조 제3항에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6조(시행규칙)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제6조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V. 토론 요지 : “생 략 ”

VI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5월 2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, 시·도 의회에 **교육위원회를 설치** 하고 **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**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 ('06.12.20 개정, 부칙에서 '10. 7. 1.설치토록 규정)
-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「지방자치법」 외에 「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」 문구 추가 (안 제1조)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외에 「**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**」 문구 추가 (안 제5조)
- 목적조항(제1조)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는 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무처장(이하“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처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며, 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	제2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<신 설>	
제3조(사무처장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처장은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3조(사무처장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.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4조 (전문의원) ①~② (생략)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	제4조 (전문의원) ①~② (해당없음) <삭 제>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로 정한다.	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조 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7조 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